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12-87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0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정이유

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목적(안 제1조)

- 마포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

### 나. 기능(안 제2조)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· 조정하고 자문에 응함
  1. 교육발전 방향, 정책제안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  2.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
  3.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 · 유치에 관한 사항
  4.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

5.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·관·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
6.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

#### **다. 위원회 구성(안 제3조)**

- 위원장(구청장) 및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,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
-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
  1.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, 지역내 교육전문가
  2.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및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
  3. 각 학교급별(유치원 초·중·고교) 교장(원장), 학교운영위원장, 학부모 대표
  4. 그 밖에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, 주민 대표 등

#### **라. 회의 등(안 제7조)**

-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
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
-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

#### **마. 의견의 청취(안 제9조)**

-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- 위원회는 전문기관, 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,

공청회 ·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

### 3. 주요 토의과제

“없음”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 2
- 2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2. 9. 6. ~ 9. 26. (동 기간내 제출된 의견없음)
- 2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- 3)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 동의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 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·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.

1. 교육발전 방향, 정책제안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2.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
3.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·유치에 관한 사항
4.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
5.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·관·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
6.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

**제3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,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.
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, 지역내 교육전문가
2.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및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
3. 각 학교급별(유치원, 초·중·고교) 교장(원장), 학교운영위원장, 학부모 대표
4. 그 밖에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, 주민 대표 등

**제4조(간사 및 서기)**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,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장으로 한다.

**제5조(임기)**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 
② 위원 중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,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**제6조(위원장 등의 임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.  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 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회의 등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 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위원의 해촉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사퇴,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그 밖의 사유(전보, 퇴직 등)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**제9조(의견의 청취)**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.  
② 위원회는 전문기관, 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, 공청회·세

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**제10조(수당 등)**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1조(운영규정)**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